

## [미국-뉴욕] FDA, 산업 관계자들에게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의견 제출 촉구



지난 1월,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 현대화법(Food Safety Modernization Act, FSMA)에 서명한 지 2년 후, 미 식품의약국(FDA)은 과일 및 채소 안전 및 식품 가공 이슈를 포괄하는 2개 제안 규정을 발표하였다.



상기 규정이 최종본은 아니나, FDA 측은 무역단체와 함께, 산업 관계자들이 동 규정 내용, 혹은 최소한 요약본이라도 읽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스티븐 뉴렌버그, 머우어스 로펌 관계자는 금번 제안 규정은 과일 및 채소 재배업자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은 관개용수를 사용하고, 패킹 작업장 내 사용 용수를 청결하게 관리하며, 근로자들을 위한 기초 위생 설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.

### 의견 수렴 제한 기간

12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뒤 FDA 측은, 필요 시 조정 작업에 돌입하고, 이후 최종 규정문을 발표한다. 스티븐 뉴렌버그 관계자는 식품 생산자들이 신규 규정에 적응하고 이에 상품을 부합시키기 위한 일정 기간을 부여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.

그러나 동 규정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다. 사라 보로스키, 길버트 엘엘 피 로펌의 파트너인 그녀는 항목별 분량이 600 페이지가 넘을 뿐 만 아니라 생산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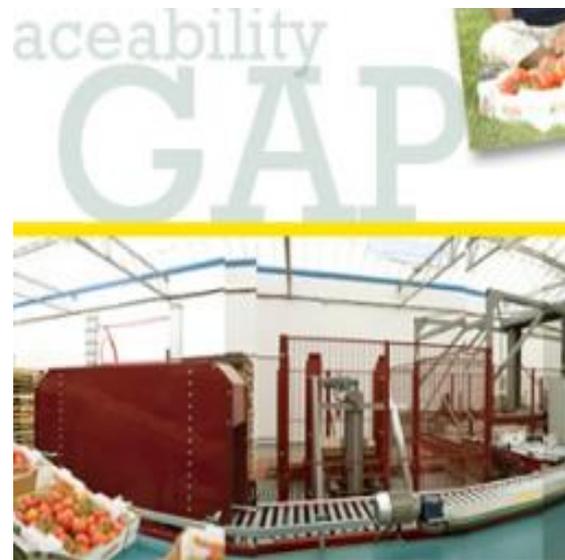


대처방안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한 기록 문서 및 식품안전 계획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스트라우스 부교수는 설명했다.

또한, 과거 FDA는 문서화 작업을 요구하지 않았으나, 이제 재배업자 및 선적업자 모두 기록 보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, 식품안전 현대화법이 전면 시행되면, 이와 동시에 다른 중요한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뉴렌버그 관계자는 설명한다.

그는 먼저 식품 생산업자들 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 우수농산물 인증제도(GAP) 및 안전 조치는 실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돈이 들고, 해당 비용은 공급 체인을 통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.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 및 엄격한 안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식품 생산업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안전 프로그램 혹은 공급체인 관리에 소홀한 생산업자들에 비해 시장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.



둘째로, 동 법은 수입업자들 역시 국내 식품 생산업자들과 동일한 식품 안전 기준을 적용받도록 FDA측에게 한층 강화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 현재 수입식품은 총 식품 공급량의 15%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.



### 소규모 재배업자들에 대한 우려

FDA는 대규모 재배업자들의 경우 이미 상기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, 신규 생산 규정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. 그러나, 중소규모 재배업자

및 선적업자의 경우, 광범위한 문서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

그러나 스트라우스 교수는 이러한 제도를 늦게 보다는 빨리 실행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.

한편, 스보로스키 로펌 파트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이 산업과 정부에게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소요비용과 강제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.

<저작권자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& kati.net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>